
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

■ 신청자정보

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의5서식] <개정 2019. 10. 29.>

※어두운 칸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-	------	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 (유선) (휴대전화)	
		전자우편	
공급유형	일반공급 신청자		특별공급 신청자
	청년 [√]	신혼부부 [√]	청년 [√] 신혼부부 [√]
신청내역	주택위치 :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외(7호선 신풍역 2번 출구)	전용면적(m)	타입
	주택유형 단독주택 [], 다가구주택 [], 아파트 [√], 연립주택 [], 다세대주택 [], 오피스텔 []		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.

2024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[신풍역 비스타동원]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별지 제 18호의 6 서식에 따른 서약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별지 제 18호의 7 서식에 따른 월 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증빙서류 (별표 1 제 1호 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)혼인관계증명서(별표1 제1호 나목2)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) <p>※상기 구비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 이 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</p>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 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.
- 이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, 이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,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